제33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
제 1 차 문 화 환 경 위 원 회
2 0 2 2 . 1 0 . 6 (목)

『2023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』

검 토 보 고 서

문 화 환 경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김성태

『2023년도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 동의안』
검 토 보 고 서

1. 소관부서 :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

2. 제안이유

○ 2023년 회계연도 경상북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코자 하는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출연에 대하여 「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」의 규정에 따라 미리 경상북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사업내용

(단위 : 백만원)

연번	소관부서	출연 기관명	사 업 명	출 연 예정액	비 고
계		1개 기관	3개 사업	2,877	
1	환경정책과	경상북도 환경연수원	경상북도환경연수원 운영	2,707	
2			환경문화 활성화사업	120	
4			힐링가든 봉사단 운영	50	

나. 전년 대비 출연규모

(단위 : 백만원)

사 업 명	2023년도 출연예정액 (A)	2022년도 출연액 (B)	증 감(A-B)	
			금 액	증감율
계	2,877	2,877	0	0.0%
환경연수원 운영비	2,707	2,707	0	0.0%
환경문화활성화사업	120	120	0	0.0%
힐링가든봉사단운영	50	50	0	0.0%

4. 출연 근거(붙임 참조)

가.「지방재정법」제18조

나.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, 제20조

다.「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설립 및 지원 조례」제5조

5. 검토의견

□ 본 동의안의 목적 및 근거는

○ 환경산림자원국 소관 1개 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2023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, 구체적인 출연금액은 앞으로 있을 2023년도 예산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.

○ 출연금은 「지방재정법」제18조 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으며,

○ 보조금과 달리 출연금은 정산을 의무화하지 않으므로,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출연을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선심성·낭비성 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.

□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

○ 경상북도환경연수원[1]에 대한 출연은 「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설립 및 지원 조례」 제5조에 근거하여 2023년도 운영비와 사업비를 출연코자 하는 것으로서,

○ 2023년도 출연금은 28억 7,7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, 출연사업은 환경연수원 운영비 27억 700만원, 환경문화활성화 사업 1억 2,000만원, 힐링가든 봉사단 운영 5,000만원입니다.

○ 첫째, 환경연수원 운영비는 인건비, 일반운영비, 성과상여금 등 조직운영 경비와 재료비, 일반보상금, 시설비, 자산취득비 등 환경교육 운영과 시설유지비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
○ 둘째, 환경문화 활성화 사업은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에코그린합창단의 시군 순회공연, 경상북도 홍보 및 교류공연, 우수합창단 벤치마킹, 합창단 지도자 수당 등의 사업비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서,

○ 연수원이 환경교육 전문교육기관으로서 환경보전 마인드 증진과 환경지도자 육성 등의 설립취지를 살펴본다면, 합창단 운영을 위한 지원이 위 취지에 부합되는 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

---

1) 1983.5월 구미시 자연학습원으로 개원, 2009.3월 (재)경상북도환경연수원 설립 등기 / 구미시 금오산로 336-97 소재

○ 셋째, 힐링가든 봉사단 운영 사업은 환경연수원 원예·산림분야 교육 수료생들의 취약계층에 대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위해 꽃밭조성, 반려식물 보급, 운영비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.

○ 환경연수원은 도민들의 환경보전의식 증진을 위한 환경분야 전문 교육기관으로서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.

6. 종합 검토의견

○ (재)경상북도환경연수원에 대한 출연은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0조 및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 및 「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설립 및 지원 조례」 제5조에 근거하고 있고 출연의 필요성, 사업의 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.

○ 다만, 매년 적지 않은 규모의 출연금이 운영비와 사업비로 투입됨을 감안하여 향후 예산심사 시 운영비와 사업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붙임 출자·출연 근거 법령 등

1 「지방재정법」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2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(장학)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
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·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.

③ 출자·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설립 목적
2. 주요 업무와 사업
3.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
4.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

제20조(재정 지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·출연 기관에 출자금·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3 「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설립 및 지원 조례」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도민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환경교육 실시로 환경보전 마인드 증진과 실천의지 배양 및 환경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법인의 설립·운영) ① 재단법인 경상북도환경연수원(이하 "법인"이라 한다)은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며,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법인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.

③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경상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3조(사업)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도민들의 환경보전의식 증진을 위한 환경분야 전반에 대한 교육
2. 공직자·교원 및 사회지도층에 대한 전문환경교육 및 사회환경교육 지도사 양성
3. 청소년들에 대한 환경체험교육
4. 국가·지방자치단체, 기업체 등의 환경관련 위탁교육 및 연구용역
5. 환경교육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·보급
6. 도지사가 정하는 환경교육
7.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5조(운영비 등 지원) ① 도지사는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도지사는 법인의 시설 유지·관리 및 제3조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고,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「경상북도 보조금 관리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